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31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서지영·박형수·서일준

이인선 · 김용태 · 이헌승

서천호 · 최수진 · 곽규택

박충권 • 고동진 • 조경태

김선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 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 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 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 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	
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	
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	
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	
한을 가진다. <u><단서 신설></u>	<u>다만, 법령 등에</u>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
	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
	<u>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